

# 선박검사관련 규정 등 제·개정 사항(2004년 1/4분기)

해양수산부 제공

## ▣ 선박안전법시행규칙적용지침 개정 (해양수산부예규 제56호, 2004. 3. 19)

### ○ 개정사유

고속기관과 같은 특수구조의 기관에 대하여 제작기술과 내구성 등이 과거에 비해 향상된 점을 고려하고, 잦은 개방검사에 따른 성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의 획일적으로 정해진 기관개방검사주기를 제조자의 개방권고 시간과 정비상태 및 선박의 특성에 따라 개방검사주기를 달리 적용함으로써 고속기관의 성능보호와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며, 현행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### ○ 주요골자

가. 고속기관을 장착한 선박에 대하여 기관작동상태 등이 양호한 경우 선박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일부 개방검사를 면제하거나 주기를 달리 적용 (제7조제2항제5호)

- 여객선 : 매년 부분적으로 실시하던 개방검사를 5년마다 전면개방

- 총톤수 5톤미만 선박 : 5년마다 실시하

던 개방검사를 10년으로 연장

- 여객선과 5톤미만 선박을 제외한 선박 : 5년마다 실시하던 개방검사를 8년으로 연장

나. FRP 재질로 건조되는 선박이 건조전 재료시험의 생략이 가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 중 실제 불필요한 사항인 건조용 물드요건을 생략하고 문구조정 (제7조제2항제7호)

다. 선박복원성기준 심사시 불필요한 도면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선박과 제출 생략 도면 추가지정 (제7조제3항제3호)

라. 기타승선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 (제10조제3호)

○ 시행일 : 2004. 3. 19

## ▣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개정(해양수산부령 제270호, 2004. 3. 19)

### ○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

석유 등 해저광물의 탐사·채취과정에서 발생된 생산수(Produced Water)의 해양배출 기준을 유분 함유량 100만분의 15 이하에서 100만분의 40 이하로 완화하고,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연료화시설, 사료화,

퇴비화시설 및 호기성(好氣性)·혐기성(嫌氣性) 분해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과 어류·폐류의 것갈 또는 그 것갈의 생산·유통·보관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○ 시행일 : 2004. 3. 19

▣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 
제정 (해양수산부령 제262호, 03.  
12. 31)

○ 제정이유

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및 어선의 재해발생시 이를 신속·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어선원 및 어선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(2003. 3. 19, 법률 제6866호)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

하려는 것임

○ 주요골자

- 가.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당해 보험연도 사업계획,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한 매 보험연도의 재해보상보험사업의 실적 및 결산을 매 보험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(제3조)
- 나.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, 보험사업의 운영비 등을 감안하여 어선원등의재해보상보험의 보험요율을 어선의 규모별·업종별로 세분하여 정함 (제6조 및 별표)
- 다. 재해보상보험규약이 정하는 선령별 및 설치기간별 감가상각율을 고려하여 어선재해보상보험의 대상인 어선의 잔존가액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선체·기관 및 의장품의 잔존가액을 계산하는 산식을 정함 (제7조)

○ 시행일 : 2004. 1. 1